2022 유·청소년클럽리그(i-League) 여름농구축제 행사 대행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2022 유·청소년클럽리그(i-Leauge) 여름농구축제 행사 대행

2. 목　　적

유·청소년 농구인구 저변 확대 및 농구라는 스포츠와 다양한 문화, 교육 콘텐츠를 결합한 즐기는 농구 문화 창출

3. 사업개요

가. 행사기간 : 2022년 9월 17일(토) ~ 18일(일)

나. 참가대상 : 2022 유·청소년클럽리그 참여 클럽 선수 및 지도자

다. 참가인원 : 약 900여명 (리그 참가팀 중 60여팀, 선수 약 800여명, 지도자 60여명, 운영/관리자 40여명)

* 실제 참가팀에 따라 인원 변동 가능

라. 행사장소 : 전국 단위의 참가자들의 교통편에 용이한 지역 선정

ex) 대전광역시 / 충청북도 충주시 등

라. 세부과업내용 (계획안 제출 필수)

※ 2022 유·청소년클럽리그 여름농구축제 기획 및 진행, 홍보

※ 장소 섭외 (정규코트 2코트 이상)

※ 참가인원 숙박업소 섭외

※ 행사 및 대회 영상 제작

※ 개회식 운영

※ 주최자배상책임보험 가입

※ 문화체험존 운영(물놀이존, 에어바운스, 캐리커쳐 체험존 등)

※ 참가인원 안전관리 대책

4. 사업예산 : 138,630,000원(대행료 및 부가세 포함)

사업명	내용	예산(원)
여름농구축제	i리그 여름농구축제 수당 - 운영, 관리요원 30명 - 심판수당 12명 - 경기계시원수당 8명	10,880,000
	ㅇ 여름농구축제 영상제작비(행사 및 대회 영상 제작)	3,000,000
	ㅇ 개회식 운영(무대,음향, LED등)	6,000,000
	ㅇ 장소사용료	2,000,000
	ㅇ 주최자배상책임보험	3,000,000
	ㅇ 여름농구축제 - 경기용품(사용구, A보드, 팀조끼, 교육용품 - 인쇄물(프로그램 책자) - 시상 및 현수막(참가클럽 패넌트, 시상메달) - 농구코트 시설(코트,전광판 등) - 운영 및 심판진 식비 - 운영 및 심판진 숙박비	33,150,000
	ㅇ 홍보인쇄물제작 - 홍보인쇄물(대형, 가두현수막, 배너 등) - 안내입간판(행사장 배치, 위치안내보드등)	6,000,000
	ㅇ 문화체험존 - 물놀이존 - 에어바운스 - 스테킹/캐리커쳐 체험존 - 체험존 보조물품 - 본부 및 참가자 휴게시설 등 임차	23,600,000
	ㅇ 식대 및 간식비 - 선수단 식대 - 선수단 간식비	45,000,000
	ㅇ 코로나19 방역시설 설치 및 운영 - 경기장 방역 - 문화체험존 방역	6,000,000
총계		138,630,000

5. 과업준수사항

가.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하며 여건변동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부과업의 추진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 내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한 사항이나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업체는 대한민국농구협회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업체는 행사에 투입되는 선수, 지도자, 진행요원 등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마. 계약업체는 과업과 관련된 법규에 의거 필요한 사업자 등록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바. 결과제출

- 결과보고서 1부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에 의거한 기타 요청 자료 일체
-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22년 12월 31일 이내

※ 과업 수행 지침

1. 인력 구성 및 운영

가. 과업수행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으로 전담팀을 구성하며, 과업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와 수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계획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

다. 투입인력 및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을 처리 및 지원하여야 한다.

2. 과업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 계약목적물을 과업기간(계약기간) 내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하며 보안을 유지해야한다.(계약목적물의 소유권과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이용권은 발주기관에 양도)

나. 발주기관에서 산출물 및 계약목적물의 특서, 상표등록 등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상황 또는 취득·인지한 정보 및 산출물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계약금의 30/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있어 상호차이가 있을 경우 협의에 따라 해결하되, 그럼에도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바. 과업수행자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와 과업 수행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

사. 과업수행자의 파산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과업기간 내 장비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

경, 폐기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

아. 발주기관은 목적물의 최종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3. 과업의 변경

가. 발주기관의 상황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하되, 그럼에도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가능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 양측 간 협의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용역의 목적 상 과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한 경우

4. 계약의 해지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7일의 시정기간을 거쳐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과업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

가. 과업에 의해 산출된 모든 산출물,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나,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유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유포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과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을 보유한 자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납품한 계약목적물 및 기타 관련 자료 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사 전·후를 불문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감수한다.

6. 과업 보안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한다.

- 과업수행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과업수행 관련 정보(내용, 결과) 등에 대한 보안조치 등

나. 과업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7.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과업 추진 중에 생산된 각종 산출물, 보고서 등은 과업일정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안내 수행보고에 따라 정기보고를 하여 과업 수행상황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보고회 시기 및 횟수 등은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과업수행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참석을 요청하는 협의 또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8. 성과품(최종보고서) 납품

가. 최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성격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서는 기한 내 납품하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확정하여야 한다. 승인을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에는 과업수행자는 재 납품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나. 본 과업수행지침은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 본 용역에 의해 산출된 모든 결과물(책자, 간행물, 기구 등) 또는 사업수행에 따른 홍보물 및 인쇄물(포스터, 팸플릿, 현수막 등),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후원명칭 사용 예시

(예시) 주최: 대한체육회 주관: 대한민국농구협회

재정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조) 문체부: www.mcst.go.kr → 문체부소개 → 상징(MI)
공 단: www.kspo.or.kr → 홍보 광장 → KSPO CI
* 홈페이지 다운로드